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조사관 신설 등〉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2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침해사고조사관 지정 및 침해사고조사원 위촉 근거 마련	3
2.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	1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3. 30.

다. 회 부 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의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7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조사관 지정 및 침해사고조사원 위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7 신설).
-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소속 공무원 중 침해사고조사관으로 지정된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4제6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u>요구할</u>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u>소속 공무원</u> 또는 제4항에 따른 민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u>명할</u> ----- ----- <u>제48</u> <u>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u> -

현행	개정안
· 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 ⑧ (생략) <u><신설></u>	----- ----- ----- -----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u>제48조의7(침해사고조사관 등) ①</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이하 “침해사고조사관”이라 한다)의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원(이하 “침해사고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u>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③ <u>침해사고조사관 및 침해사고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④ <u>침해사고조사관의 자격·임명·직무배치 및 침해사고조사원의 자격·위촉·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소속 기관의 장, 지방우정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과기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과기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²⁾,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77건이었던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4년에는 1,887건, 2025년에는 2,38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침해사고 신고	DDoS	124	89	213	153	132	285	238	350	588
	악성코드	156	144	300	106	123	229	115	239	354
	(랜섬웨어)	(134)	(124)	(258)	(92)	(103)	(195)	(82)	(192)	(274)
	서버해킹	320	263	583	504	553	1,057	531	522	1,053
	기타	64	117	181	136	180	316	150	238	388
합계		664	613	1,277	899	988	1,887	1,034	1,349	2,383

자료: 「25년 사이버 위협 하반기 동향 및 26년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6.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이처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인력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원인조사 실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현재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과 민간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³⁾, 개정안은 개별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식과는 별도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침해사고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상시적·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효적인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침해사고조사원의 직무 범위와 조사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법은 침해사고 조사 주체를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생략)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 조사관을 지정하여 침해 사고의 조사·분석 사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중에서 침해 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사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침해사고조사원의 자격·위촉·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모두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침해사고조사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여 공권력 작용에 준하는 사실상의 조사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사업장 출입이나 자료 확인·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민간 인력의 역할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침해사고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침해사고조사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의 주체를 소속 공무원으로만 한정하고 별도의 민간전문가 위촉을 통한 조사업무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때⁴⁾, 조사권 행사와 관련된 권한 배분 및 책임체계에 대하여는

4)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침해사고조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 보완이 필요함.
- 현행법은 과기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 관련 제출 받은 자료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조사 종료 후 파기하도록 규정⁵⁾하고 있는데, 새로 위촉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인 침해사고조사원에게도 관련 사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시행 예정인 개정법과의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발의 이후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⁶⁾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제48조의7로 신설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조문 번호를 조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침해사고조사관에게 침해사고 관련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828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참고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침해사고조사관이 개정안에 따른 행정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조사권의 목적 외 남용을 금지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조사자료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⁷⁾, 행정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기관 제공은 행정조사 관련 법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규모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정보보호 정책·제도 총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을

7)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해사고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침해사고조사원에 대해서도 침해사고조사관과 동일한 권한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조사·분석 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음⁸⁾.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침해사고의 특성상 침해경로 등이 밝혀지더라도 실제로 침해행위를
행한 자는 성명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도로 침해
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기술적 문제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8)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828호)의 경우, 침해사고조사원이 아닌 침해사고조사관에
대해서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참고]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입법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
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침해사고 발생시 과기부장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자료제출 ‘명령’권으로 변경함(안 제48조의4제6항).
-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기부장관이 자료의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 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생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u>요구</u>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u>소속 공무원</u>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⑥ ----- ----- ----- ----- ----- ----- <u>명할</u> ----- ----- <u>제48</u> <u>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u> ----- -----

현행	개정안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 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 ⑧ (생략) <u><신설></u>	----- -----.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 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 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 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 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u>

현행	개정안
	<u>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u>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 부 칙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과기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¹⁰⁾.
-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응조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로그 기록¹¹⁾, 시스템 구성자료 및 사고 관련 자료에 크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사업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침해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령’ 권한으로 변경하고, 제출명령 미이행 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침해 대응 체계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로그(log)는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내용이나 접속현황 등 다양한 운용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의미하며, 로그분석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점, 침입경로, 공격자 추적 등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음(KISA보호나라&KrCERT/CC, 정보보호 용어, ‘로그분석’).

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법¹²⁾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령’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의 재제출명령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개정(2026.3.31.)되어 2026.10.1.자로 시행 예정으로, 동 개정안에 대한 개정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235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3.31.>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